

2026. 06. 30.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금융결제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이하 “오픈뱅킹업무”라 한다)의 제공자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과 오픈뱅킹업무를 이용하는 이용기관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픈뱅킹업무”란 참가기관 및 오픈뱅킹 정보제공자의 시스템과 결제원의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오픈뱅킹 이체·조회업무를 말한다.
2. “참가기관”이란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하여 출금·입금,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오픈뱅킹 정보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 등록된 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이용계약에 준하는 업무규칙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
5. “하위사업자”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모듈을 통하여 자사 고객에게 오픈뱅킹 기능을 간접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오픈뱅킹시스템”이란 오픈뱅킹업무를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시스템(이하 “오픈뱅킹업무 중계시스템”라 한다)과 참가기관 및 정보제공자의 처리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오픈뱅킹이체업무”란 참가기관 내부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API와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계좌의 출금 및 입금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오픈뱅킹조회업무”란 참가기관 및 정보제공자 내부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API와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금융정보의 조회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주거래기관”이란 이용기관의 지급 및 수납계좌와 수수료 납부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을 말한다.
10. “출금기관”이란 출금이체업무의 경우 이용기관에게 자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을, 입금이체업무의 경우 이용기관의 지급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을 말한다.
11. “입금기관”이란 출금이체업무의 경우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을, 입금이체업무의 경우 이용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한 참가

기관을 말한다.

12. “사용자”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가기관 및 정보제공자의 개인 고객을 말한다.
13. “핀테크이용번호”란 사용자가 결제원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실제 계좌번호 대신 발급받는 가상번호를 말한다.
14. “오픈API 통합포털(이하 “통합포털”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업무 이용 신청 및 계약체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15. “오픈API 테스트베드(이하 “테스트베드”라 한다)”란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업무에서 제공하는 오픈API를 활용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API와 테스트 도구 등을 지원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16. “영업일”이란 다음 각 목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나. 토요일
 - 다. 근로자의 날
17.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이용기관의 분류)

- ① 오픈뱅킹업무 이용기관은 제2조 제2호의 참가기관, 대형 핀테크사업자(이하 “대형사업자”라 한다) 및 중소형 핀테크사업자(이하 “중소형사업자”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대형사업자 및 중소형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형사업자 :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중소형사업자 : 자본금 20억원 미만인 경우

제4조(계약의 성립 및 해지)

- ① 이용기관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오픈뱅킹업무 이용계약은 성립하며, 이용승인이 해지된 때 오픈뱅킹업무 이용계약은 해지된다.
-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참가기관 또는 대형사업자인 경우 본 약관과 별도로 오픈뱅킹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오픈뱅킹 제공업무 및 이용방식)

- ① 오픈뱅킹업무에서 제공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오픈뱅킹이체업무
 - 가. 출금이체업무 : 이용기관의 출금에 동의한 사용자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

나. 입금이체업무 : 이용기관이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

2. 오픈뱅킹조회업무

가. 계좌정보 조회업무

- 1) 잔액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2) 거래내역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3) 계좌실명조회업무 : 이용기관이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계좌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출금이체 등을 신청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4) 송금인정보조회업무 :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된 이용기관이 소액해외송금을 위해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입금한 사용자(송금인)의 실명 및 지급계좌번호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5) 수취조회업무 : 이용기관이 입금이체업무 등을 하기 전에 이용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계좌의 입금가능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6) 계좌통합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오픈뱅킹업무 사용자 등록을 하기 전 본인이 보유한 전체 계좌 목록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하 “계좌통합관리시스템” 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나. 카드정보 조회업무

- 1) 카드목록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2) 카드기본정보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에 대한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3) 카드청구기본정보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에 대한 청구금액 및 결제일 등 월별 청구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4) 카드청구상세정보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에 대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등 월별 청구 상세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다. 선불정보 조회업무

- 1) 선불목록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 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2) 선불연계정보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의 연계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3) 선불잔액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4) 선불거래내역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라. 보험정보 조회업무

- 1) 보험목록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보험 상품명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2) 보험납입정보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보험별로 납입계좌번호 및 납입보험료 등 보험납입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마. 대출·리스정보 조회업무(캐피탈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 대출·리스목록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대출·리스 상품명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 2) 대출·리스기본정보 조회업무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계약한 대출·리스별로 상환계좌번호 및 상환방식 등 대출·리스기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

② 이용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또는 탈퇴 처리 목적에 한하여 영업점 창구거래 등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시스템)

결제원과 이용기관은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등을 이용하여 상호 시스템 간 연결을 통해 오픈뱅킹업무를 처리하며, 시스템의 세부사항은 「오픈뱅킹 API 명세서」(이하 “API 명세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시간)

- ① 오픈뱅킹업무 중계시스템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05부터 23:55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참가기관 및 정보제공자의 운영시간은 00:10부터 23:5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의 사정에 따라 결제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결제원, 참가기관 및 정보제공자는 오픈뱅킹업무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체작업 또는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픈뱅킹업무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제원은 지체없이 이용기관에게 전자우편,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8조(이용계좌)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오픈뱅킹이체업무 및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계좌정보 조회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이하 “수시입출금계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에 의한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계좌(이하 “투자자예탁금계좌”라 한다), 정기성 예금·적금계좌, 수익증권계좌, 가상계좌로 하되, 각 계좌종류별 이용가능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시입출금계좌 및 투자자예탁금 계좌 :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수취조회 업무
2. 정기성 예금·적금계좌 :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수취조회업무
3. 수익증권계좌 : 잔액조회, 계좌실명조회 업무
4. 가상계좌 : 입금이체, 수취조회업무

② 제1항의 투자자예탁금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는 제외한다.

제9조(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오픈뱅킹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가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자신의 패스워드, 이용기관 식별코드, 접속 토큰, 발급·등록된 접근매체 등이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하위사업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기관은 사용자 인증정보, 결제비밀번호 등이 유출 및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하위사업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기관은 사용자,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이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관은 제55조에 명시된 사용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은 이용기관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결제원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⑥ 이용기관은 서비스 실시 전 결제원과의 업무연락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 관련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이용기관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의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오픈뱅킹업무 이용신청기관 또는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신용정보를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결제원은 신용정보를 오픈뱅킹업무 이용 신청 및 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용 절차, 변경 및 해지

제11조(이용 자격)

① 오픈뱅킹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정보 조회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오픈뱅킹업무 참가기관
2. 「오픈뱅킹업무 이용자격 기준」(별첨 1)을 충족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 및 사행기구 제조·판매, 부도기업
2. 게임머니·아이템중개 또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계약 중 상조업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P2P포함) 및 대부중개업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7.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하는 기업
8. 기타 금융질서 문란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외서비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오픈뱅킹업무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금대행 서비스 : 사용자의 출금동의를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아 이용기관이

출금을 대행하거나 동 권리를 재판매하는 경우

2. 납부서비스 : 이용기관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예약)하는 경우
3. 인증 생략 서비스 : 출금이체 시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인증을 생략하고 추심(예약)하는 경우

제13조(이용 신청)

이용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제원 소정양식의 오픈뱅킹업무 이용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2. 하위사업자가 있는 경우 하위사업자 운영신고서(별지1)
3.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이용적합성 승인)

① 결제원은 제13조에 따라 이용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용대상여부, 사업모델의 적정성, 법적 자격요건, 재무상태, 보안수준, 예상건수 등을 확인한 후 이용적합성 승인 결과를 이용신청기관 앞 통지한다.

② 결제원은 이용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적합성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이용 자격이 없거나 사업모델이 제외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4. 결제원이 오픈뱅킹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결제원은 이용신청기관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적합성 승인 불가사유를 통지한다. 다만,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결제원은 이용적합성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신청기관에 대하여 이용적합성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① 이용적합성 승인이 완료된 이용신청기관은 테스트베드에 접속하여 API 명세서에 따라 사업에 이용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테스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테스트는 이용적합성 승인완료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이용신청기관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이용적합성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 완료된 이용신청기관이 참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동테스트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원은 참가기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결제원은 이용신청기관의 테스트 결과 최종 확인 요청 시 구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등 테스트 정상 완료 여부를 점검한다.

제16조(보안점검)

- ①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된 이용신청기관은 「오픈뱅킹 보안점검 관리기준」(별첨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받고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기관이 이용신청기관인 경우 제1호의 기업 보안점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업 보안점검 : 이용기관의 운영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점검
 2. 서비스 취약점 점검 : 개발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 ② 제1항의 보안점검 유형별 세부점검절차 및 점검항목 등은 보안점검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결제원은 보안점검기관을 통해 전달받은 점검결과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등을 확인한 후 사전검증 완료 기관으로 등록한다.
- ④ 이용기관은 제1항의 사전 보안점검과 별개로 서비스 개시 이후 「오픈뱅킹 보안점검 관리기준」(별첨 5)에 따라 사후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며,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결제원이 별도로 통지한 상당한 기간 내에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⑤ 결제원은 「오픈뱅킹 보안점검 관리기준」(별첨 5)의 보안점검 사유 외 서비스 전면 개편, 금융사고 발생 등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보안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기관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승인)

- ① 결제원은 보안점검이 완료된 이용신청기관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최종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고, 이용신청기관 및 참가기관에 주거래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 ② 이용신청기관은 참가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기관 수수료 수준 등의 협의를 거쳐 주거래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주거래기관으로 선정된 참가기관은 주거래기관 승인 사실 및 결정된 이용기관 수수료를 결제원에 통보한다.
- ④ 주거래기관에서 통보한 이용기관 수수료에 대해 해당 이용신청기관이 승낙한 경우 결제원은 동 기관으로부터 보증수단, 잔고관리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징구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 이용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 ⑤ 최종 이용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이용신청기관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결제원과 해당 이용신청기관 간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기관이 참가기관 또는 대형 사업자인 경우 결제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⑥ 결제원은 이용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용승인 정보를 계약 체결일의 익영업일 07:00까지

전체 참가기관으로 전송하며, 해당 이용기관의 업무개시일은 계약 체결일의 2일(영업일 기준) 이후부터로 한다.

제18조(이용기관의 이용계좌)

① 이용기관 중 출금이체 업무 이용기관은 수납계좌 또는 계정(이하 “수납계좌” 라 한다)을, 입금이체 업무 이용기관은 지급계좌 또는 계정(이하 “지급계좌” 라 한다)을 주거래기관에 개설하여야 하며, 동 수납계좌 및 지급계좌는 이체업무별 최대 100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모든 이용기관은 이용기관 수수료 납부를 위한 계좌 또는 계정(이하 “수수료 납부계좌” 라 한다)을 주거래기관에 개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계좌는 1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이용 한도)

① 이용기관 중 출금이체 또는 입금이체 업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이용한도 금액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이용한도 금액을 승인 및 관리한다.

1. 출금이체 이용기관 : 건당한도 및 일간한도 설정

2. 입금이체 이용기관 : 건당한도 설정

② 출금이체 업무의 건당한도 금액은 사용자별 일간한도(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일간한도 금액은 사전에 결제원 및 참가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설정한다. 다만, 이용기관은 출금이체 업무의 건당한도 금액을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용수단 및 거래종류별 한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출금이체 이용기관의 일간한도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출금이체 업무 이용이 자동중지된다.

④ 입금이체 업무의 건당한도 금액은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증한도 및 보증수단)

① 출금이체업무 이용기관은 오픈뱅킹업무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일간한도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보증한도를 확인하고 동 보증한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관 중 이체 업무를 제공하는 참가기관인 경우 별도 보증수단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한도는 출금이체 일간한도 금액의 200%를 기본으로 하되, 결제원이 「보증수준 설정기준」(별첨 2)에 따라 가감하여 운영한다. 다만, 최소 보증한도 금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금이체 이용기관이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기준」(별첨 3)에 따른 일정점수를 충족한 대형 사업자인 경우 또는 조회 업무만을 제공하는 참가기관인 경우 참가기관별로 출금이체 일간 한도를 설정하고 참가기관과

개별 협의하여 보증한도 설정 및 보증수단을 해당 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한도 개별 협의는 결제원의 참가기관 앞 협의 요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형사업자 또는 조회 업무만을 제공하는 참가기관은 협의가 완료된 참가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출금이체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참가기관과도 보증한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제21조(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관리)

① 출금이체업무 이용기관이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결제원에 제출 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를 이용기관, 피보험자를 결제원으로 설정하고 보증범위는 오픈뱅킹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②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이 오픈뱅킹업무처리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증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은 보증만료일을 확인하여 만기 5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만료일까지 갱신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금이체업무 이용이 자동중지된다.

제22조(사용자의 통장기재내역)

① 출금이체업무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통장기재내역에 기재할 이용기관 상호를 서비스 개시전에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자금 특성상 통장기재내역을 이용기관의 상호로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예외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기관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를 원칙으로 한다.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출금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에 출금지시를 전송할 때, 해당 이용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장기재내역을 설정하여 전송한다.

제23조(사용자 인증 및 동의)

① 출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카드정보 조회, 선불정보 조회, 보험정보 조회, 대출·리스정보 조회 업무 이용기관은 사용자 본인확인 및 동의절차 등 사용자 인증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결제원 인증 : 결제원의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본인확인 및 동의를 진행하며, SMS인증·인증서 본인확인(사용자 인증), ARS·전자서명(사용자 동의) 등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인증수단 중 이용기관이 선택하여 사용 가능

2. 자체 인증 : 이용기관이 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자체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자 본인확인 및 동의 진행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체 인증은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준」(별첨 3)에 따른 일정점수를 충족한 이용기관에 한하여 허용한다.

③ 자체 인증 이용기관은 동의절차 진행 시, 사용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참가기관의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결제원은 금융사고 예방, 보안 취약점 발견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기관이 채택 중인 인증방식 및 인증수단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하위사업자 관리)

① 이용기관이 참가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하위사업자에게 서비스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하위사업자의 서비스가 제11조 제2항의 이용대상 제외업무 또는 제12조의 제외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하위사업자가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객사 맞춤형 하위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오픈뱅킹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불정보 조회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하위사업자에게 서비스모듈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관리기준」(별첨 4)에 따라 하위사업자를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서비스모듈 제공 시 결제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모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기관은 사용자가 결제하고자 하는 금액을 등록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는 서비스모듈에 한하여 하위사업자에 제공이 가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행위 등 그 외 서비스가 가능한 모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가 충전한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는 이용기관 자체 서비스로 본다.

⑤ 이용기관은 하위사업자에 대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 민원 또는 관련 사고 발생 시 해당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결제원은 하위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간 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의 하위사업자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⑥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관리기준」(별첨 4)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간 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이용기관의 하위사업자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제 3 장 이용 변경, 중지 및 해지

제25조(이용승인 내용 변경)

① 이용기관이 기 등록된 이용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결제원 소정양식의 오픈뱅킹업무 이용변경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이용기관 정보 변경의 경우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변경을 승인한다.
2. 주거래기관 변경의 경우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용기관이 변경을 희망하는 주거래기관으로부터 이용업무별 수수료를 통보받고, 이용기관이 동 수수료에 승낙하고 변경을 최종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한다.
3. 이용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용 적합성 승인, 테스트 및 보안점검을 완료하고, 추가 업무에 대해 주거래기관이 통보한 수수료를 이용기관이 승낙하고 변경을 최종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한다.
4. 출금한도 변경의 경우 추가 보증수단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징구하고 변경을 승인한다.

② 이용기관이 기 등록된 이용승인 내용 중 이용 승인 받은 사업모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서비스계획서를 사전에 결제원에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용승인 내용 변경일은 결제원이 이용기관 원장에 반영한 날로 하며, 결제원은 오픈뱅킹업무 이용변경 정보를 변경일 1일 전(영업일 기준) 07:00까지 전체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제26조(이용 중지)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이용기관에 대한 오픈뱅킹업무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용기관 수수료 또는 인증비용 미납이 발생한 경우
2. 출금이체업무 이용기관이 보증만료일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이용기관 중 이체 업무를 제공하는 참가기관이 제31조 제2항에 따른 타 기관 간 이체서비스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지 권고가 있는 경우
5. 이용기관이 휴업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간 오픈뱅킹업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 등록된 기관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선불정보 조회업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서비스 개시 이후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보안점검을 받지 않거나 점검결과 미흡사항을 통지된 상당한 이행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9. 제16조 제5항에 따라 결제원이 보안점검을 요청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안점검을 받지 않거나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10. 이용기관이 제23조 제4항에 따른 인증방식 변경 및 보안 강화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이용기관이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계획서 사전 제출 및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모델을 변경한 경우
 12. 이용기관이 제24조 및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관리기준」(별첨 4)에 따른 하위사업자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 오픈뱅킹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이용기관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동 이용기관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용중지 사실을 해당 이용기관에 문서로 통지한다.

제27조(이용 해지)

- ①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업무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오픈뱅킹업무 이용해지 신청서” 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정당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내용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한 경우
 3. 이용기관 수수료 또는 인증비용 미납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출금이체업무 이용기관이 제26조 제1항 제2호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이 중지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타 기관 간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6. 이용 제외 대상(하위사업자 포함)으로 확인되는 경우
 7. 이용 제외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제2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이용이 중지된 이후 1년 이내에 보안 점검을 받지 않거나 점검결과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9. 결제원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모델로 오픈뱅킹업무를 이용하는 경우
 10.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11. 참가기관으로부터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12.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에 대한 결제원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최근 6개월간 오픈뱅킹업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14. 폐업 등 이용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5. 과도한 민원발생 등 정상적인 업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하는 경우
 16.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용이 중지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오픈뱅킹업무 이용을 중지하고 해지예정 통보를 하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이용기관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용기관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등 해당 기간 내에 소명 내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기관의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기관을 이용중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결제원은 이를 해당 이용기관에 문서로 통지한다.
- ⑥ 해지일은 결제원이 이용기관 원장에 해지등록한 날로 한다.

제28조(사후 이용 관리)

- ① 결제원은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실시중인 이용기관에 대하여, 해당 이용기관과의 계약체결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반기마다 이용 자격 부합여부 및 서비스 적합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등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용기관이 본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결제원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26조 내지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오픈뱅킹업무 이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출금 및 입금이체 업무

제29조(출금이체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출금기관으로 출금을 요청한다.

- ③ 출금기관은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자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한다. 사용자 계좌의 출금은 계좌 잔고에 한해서 출금하고, 잔고가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출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결제원은 제3항의 출금 결과를 근거로 주거래기관으로 입금을 요청하며, 주거래기관은 이용기관의 수납계좌에 실시간으로 입금한다. 다만,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결제원은 출금 취소를 출금기관으로 요청하며, 출금기관은 출금 취소를 처리하고 사용자 계좌로 자금을 반환한다.
- ⑤ 결제원은 출금이체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30조(입금이체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수취인의 입금계좌번호가 포함된 입금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주거래기관으로 출금을 요청하며, 주거래기관은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한다.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출금은 계좌 잔고에 한해서 출금하며, 잔고가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출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금이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결제원은 제2항의 출금결과를 근거로 입금기관으로 입금을 요청하며, 입금기관은 수취인의 계좌에 실시간으로 입금한다. 다만,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결제원은 출금 취소를 주거래기관으로 요청하며, 주거래기관은 출금 취소를 처리하고 이용기관 지급계좌로 자금을 반환한다.
- ④ 결제원은 입금이체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31조(타 기관 간 이체업무)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에게 출금이체업무와 입금이체업무를 결합하여 사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타 기관 간 이체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이용기관 중 이체 업무를 제공하는 참가기관의 경우 사용자에게 타 기관 간 이체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타 기관 간 이체업무를 제공한 이용기관은 타 기관 간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용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사고 대응)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기능 및 금융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이용기관은 출금이체 또는 입금이체 요청 시 이체 요청

고객 정보, 자금용도, 부가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송하여야한다.

② 출금이체업무 및 입금이체업무를 이용하여 타 기관 간 이체업무를 제공하는 이용기관은 제1항의 정보에 추가하여 최종 수취은행, 최종 수취인명 등의 내용을 출금이체 요청 시 포함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결제원은 결제원의 이상거래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통해 탐지된 내역을 해당 이용기관에 API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기관 중 자체 FD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참가기관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개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제원에 탐지내역 공유를 요청하여 수신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이상거래 탐지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거래를 확인하여 사용자 보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좌조회 업무

제33조(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업무 처리)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잔액조회 또는 거래내역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잔액조회 또는 거래내역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잔액조회 또는 거래내역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④ 결제원은 잔액조회 또는 거래내역조회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34조(계좌실명조회업무 처리)

① 이용기관은 계좌실명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에서 요청한 계좌의 실명을 해당 참가기관이 전송하도록 조치하며, 그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35조(송금인정보조회업무 처리)

① 이용기관은 송금인정보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기 등록된 수납계좌에 자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실명 및 지급계좌번호를 해당 참가기관이 전송하도록 조치하며, 그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36조(수취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수취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에서 요청한 계좌의 입금가능여부 등을 해당 참가기관이 전송하도록 조치하며, 그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37조(계좌통합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계좌통합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계좌통합조회 요청내역을 계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다.
- ③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은 계좌통합조회업무 참가기관에 계좌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결제원에 전송한다.
- ④ 결제원은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 6 장 카드조회 업무

제38조(카드목록 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목록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카드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카드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보유한 카드 목록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④ 결제원은 카드목록 조회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39조(카드기본정보 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기본정보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카드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카드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기본정보, 결제계좌정보 등 카드기본정보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④ 결제원은 카드기본정보 조회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40조(카드청구기본정보 및 상세정보 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청구기본정보 또는 상세정보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카드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카드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월별 청구금액, 결제일, 월별 청구 이용내역 등 카드청구기본정보 또는 상세정보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④ 결제원은 카드청구기본정보 또는 상세정보 조회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 7 장 선불조회 업무

제41조(선불목록 및 선불연계정보 조회업무 처리)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목록 또는 선불연계정보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선불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제공자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③ 정보제공자는 사용자의 선불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선불권면 목록 및 연계계좌번호 등 선불목록 또는 선불연계정보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④ 결제원은 선불목록 또는 선불연계정보 조회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42조(선불잔액 및 선불거래내역 조회업무 처리)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권면 잔액 또는 거래내역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선불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제공자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③ 정보제공자는 사용자의 선불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보유한 선불권면 잔액 또는 거래내역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④ 결제원은 선불권면 잔액 또는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 8 장 보험조회 업무

제42조의2(보험목록 조회업무 처리)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목록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보험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보험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계약한 보험 상품명 등 보험목록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④ 결제원은 보험목록 조회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42조의3(보험납입정보 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납입정보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보험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보험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계약한 보험별 납입계좌번호 및 납입보험료 등 보험납입정보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④ 결제원은 보험납입정보 조회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 9 장 대출·리스조회 업무

제42조의4(대출·리스목록 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리스목록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대출·리스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대출·리스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계약한 대출·리스 상품명 등 대출·리스목록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④ 결제원은 대출·리스목록 조회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42조의5(대출·리스기본정보 조회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리스기본정보 조회 요청내역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사용자의 대출·리스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참가기관에 조회 내역을 전송하도록 조치한다.
- ③ 참가기관은 사용자의 대출·리스 정보조회 등록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계약한 대출·리스별 상환계좌번호 및 상환방식 등 대출·리스기본정보 조회 결과를 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④ 결제원은 대출·리스기본정보 조회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전송한다.

제 10 장 자금청구·반환 처리

제43조(자금청구·반환 및 처리협조)

- ① 이용기관은 입금이체가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착오송금을 이유로 결제원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용기관은 사용자가 자금청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채널 또는 고객센터 등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이용기관이 제2항의 자금청구 신청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이용기관은 참가기관의 업무 처리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무분별한 자금 반환 청구를 요청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⑤ 이용기관은 자금청구·반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수취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4조(자금청구·반환의 대상 업무 및 거래)

- ① 자금청구·반환의 대상업무는 제5조 제1항 제1호 나.의 입금이체업무에 한하며, 대상거래는 사용자의 착오로 이체금액, 수취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착오송금 거래로 한다.
- ② 출금이체업무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5조(자금청구·반환의 한도) 1회 자금청구·반환 금액의 한도는 제19조 제4항의 입금이체 건당한도에 따른다.

제46조(자금청구·반환업무 처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자금청구·반환이 필요한 거래 발생 시 청구내역, 사유 및 이용기관 담당자 E-MAIL 주소 등을 포함하여 결제원에 자금반환 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청구요청을 참가기관에 전송하고, 참가기관으로부터 정상수신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결과를 이용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이용기관은 자금반환 청구 당일부터 결제원에 자금반환 청구 요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 시 진행상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결제원은 참가기관으로부터 자금청구 처리내역을 수신하면 반환 결과를 기록 및 해당 이용기관 담당자에게 E-MAIL 통보하고, 이후 이용기관의 자금반환 결과 조회 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자금반환 결과를 통보받으면, 정상반환일 경우 반환 금액을 사용자에게 입금처리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반환불가일 경우 불가사유 및 내역을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분청구 및 부분반환)

① 이용기관은 부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참가기관은 원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불가 처리를 할 수 없다.

② 참가기관은 부분반환을 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청구금액 또는 원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거부 처리를 할 수 없다.

제48조(자금청구·반환의 운영시간) 이용기관, 결제원 및 참가기관 간 자금청구·반환 업무처리 운영시간은 제7조에 따르되, 07:00부터 23:30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한다.

제 11 장 수 수 료 등

제49조(수수료)

① 이용기관은 오픈뱅킹업무를 이용하는 대가로 주거래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오픈뱅킹조회업무 중 계좌통합조회업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제원(계좌통합관리시스템)이 해당 이용기관의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수수료를 출금한다.

② 수수료는 주거래기관에서 정하고 이용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결정된다.

제50조(수수료의 청구 및 수납)

① 주거래기관은 결제원에서 집계한 이용기관의 업무별 정상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간 총수수료를 이용기관의 수수료 납부계좌에서 처리하며, 출금처리 주기는 주거래기관 자율로 정한다.

② 주거래기관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제1항의 수수료 수납절차를 이행한다.

제51조(수수료 미납 시 처리)

① 이용기관의 수수료 수납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여 주거래기관이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금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픈뱅킹업무 이용이 중지된다.

② 이용기관이 수수료 수납계좌의 출금가능 잔고를 보충시켜 미납된 수수료 출금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오픈뱅킹업무 이용이 재개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주거래기관은 수수료 수납계좌의 이용제한

잔고에서 미납된 수수료를 출금 처리한다.

제52조(인증비용)

-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픈뱅킹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을 통해 인증 및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은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인증비용은 사용자 본인인증 및 동의 서비스로 구분되며, 결제원에서 각 인증 수단별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53조(인증비용의 청구 및 수납)

-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인증비용을 결제원에서 집계한 해당 거래일의 정상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용기관의 수수료 수납계좌에서 CMS방식으로 출금하며, 출금처리 주기는 결제원이 정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은 인증비용 납부를 위해 서비스 실시 전 결제원 앞 CMS 출금동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이용기관의 수수료 수납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여 인증비용을 출금할 수 없는 경우 결제원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픈뱅킹업무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54조(고지 의무)

- ① 이용기관은 출금 또는 입금처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용기관은 사용자가 이용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동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사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용기관은 오픈뱅킹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용자 또는 수취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용자 및 수취인, 결제원에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자 보호)

-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의 예금 잔액 오인 방지를 위해 API 명세서 상의 ‘오픈뱅킹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용기관은 사용자보호를 위하여 민원 및 사고발생 시 피해금액을 선지급하는 등의 우선적 피해구제 방법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민원을 접수한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은 15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보호조치에는 결제원의 민원해결 중재 및 이용기관 계좌에 대한 출금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해당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통합포털 부정접속 방지)

① 결제원은 통합포털의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접속용 패스워드 입력오류가 연속 5회를 초과할 경우 통합포털 이용을 중지시킨다.

② 이용기관은 통합포털 이용 중지 해제를 원할 경우 결제원이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전산처리 절차)

① 전문 송·수신절차, 방법, 시간, 이체일 등 전산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제원 및 참가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용기관은 결제원의 오픈뱅킹업무 중계시스템 운영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무분별한 거래요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장애내용, 발생사유, 복구예상시간 등을 결제원에 우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방법 등)

① 결제원은 오픈뱅킹업무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시 해당 거래기록을 파기한다.

1. 이용업무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오픈뱅킹업무 거래일시, 오픈뱅킹업무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3.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② 결제원은 제1항의 거래기록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한다.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9조(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오픈뱅킹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얻는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별지 3의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회사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써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 ② 이용기관이 제10조 및 제59조의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한다.
- ③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내용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송된 내용 등이 착오·오용 및 위조·변조·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관이 사용자나 제3자에게 수납자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용기관의 전산 착오 등으로 출금이체 된 경우
 2.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이체 된 경우
 3. 이용기관이 본 약관 제10조 및 제59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⑤ 참가기관이 제4항의 사유로 이용기관을 대신하여 사용자나 제3자에게 출금자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이용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1조(분쟁 처리)

- ① 이용기관이 참가기관 또는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결제원 처리기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이용기관은 오픈뱅킹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제원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제원은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제원은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결제원의 통합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이용기관은 분쟁처리와 관련한 결제원 등의 사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2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본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3조(준용 규정)

- ① 참가기관 계좌의 입금 및 출금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과 해당 계좌의 거래약관을 준용한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6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오픈뱅킹업무 이용신청기관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결제원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오픈뱅킹업무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관할 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9. 10. 15.)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9. 10.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약관의 폐지) 「오픈플랫폼공동업무 이용약관」은 결제원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에 폐지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19. 12. 16.)

본 약관은 2020. 1. 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4.)

본 약관은 2020. 3.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1.)

본 약관은 2020. 5.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8.)

본 약관은 2021. 1.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30.)

본 약관은 2021. 5.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4.)

본 약관은 2021. 7. 1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용기관으로 기 참여중인 이체 업무 제공 참가기관의 경우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2항 제5호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4.)

본 약관은 2022. 5.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14.)

본 약관은 2022. 7.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17.)

본 약관은 2022.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22.)

본 약관은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31.)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5. 4.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약관 시행 당시 종전 약관 제17조에 따라 이용기관으로 승인 받은 자는 이용기관으로 본다. 다만,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본 약관 시행 당시 종전 약관 제24조 및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관리기준」(별첨 4)에 따라 하위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하위사업자로 본다. 다만,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24조 및 (별첨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6. 5. 29.)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 6. 30. 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오픈뱅킹업무 이용자격 기준

오픈뱅킹업무 이용자격 기준

① 오픈뱅킹 출금이체업무 이용자격

-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를 허가받은 자
 -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자금이체업무'를 등록한 자
 - 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등록한 자
 - 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등록한 자
 - 마.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
 - 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모델^{주)}을 영위하는 것으로
결제원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주)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자 보호체계를 갖추거나, 사용자 본인 계좌 간 이체 등 이체대상이 제한된 경우

② 오픈뱅킹 입금이체업무 이용자격

- 가. 오픈뱅킹 출금이체업무 이용자격 충족 기관
-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③ 오픈뱅킹 조회업무 이용자격

- 가. 오픈뱅킹 출금이체업무 또는 입금이체업무 이용자격 충족 기관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업종코드	업종명	내 용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OS, DBMS 개발 등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사무용 S/W 개발 등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맞춤형 S/W개발 등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시스템 통합(SI) 구축 설계 등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컴퓨터 장애 복구 등
63111	자료 처리업	· 자료 입력 처리 등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포털 서비스 등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등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등

- 다. 기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별첨 2) 보증수준 설정기준

- 기본 보증한도 : 일간 출금한도의 200%
- 보증수준 설정기준에 따라 보증한도 가감산 : 최저한도는 일간 출금한도의 100%, 최저 보증금액은 5백만원

⇒ 평가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가감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보증보험 기준에 반영

종합점수	보증보험 기준(일간출금한도)
~ -100점	100%
-99 ~ -51점	150%
-50 ~ 50점	200%
51 ~ 99점	250%
100점 ~	300%

<보증수준 설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점수	내 용
감산 (-)	기업신용등급	20	외부 전문 신용평가사를 통한 기업신용평가정보
	납입자본금	15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
	자기자본(자본총계)	15	직전년도 기업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자본총계) 항목
	연간 매출액	20	직전년도 기업 재무제표 상 매출액 항목
	회사업력	10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등기연월일 기준 회사업력
	서비스 기간	10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기간
	거래건수	10	최근 1년간 오픈뱅킹 출금이체 거래건수(편뱅킹 포함)
	관련 자격 보유 여부	50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소액해외 송금업자 해당 여부
가산 (+)	고객민원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	30	고객민원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 운영 수준
	FDS 또는 보안관제 운영 여부	20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제 운영 여부
	AML 운영 여부	20	AML(자금세탁방지) 운영 여부
	멀티인증 적용 여부	30	출금이체 계좌등록 시 멀티인증 적용 여부

□ 감산 기준(-)

- 기업신용등급(20점)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이하 또는 평가 불가
점수	20점	20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납입자본금(15점)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점수	0점	5점	8점	10점	15점

○ 자기자본(자본총계)(15점)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점수	0점	5점	8점	10점	15점

○ 연간 매출액(20점)

구분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점수	0점	5점	10점	15점	20점

○ 회사업력(10점)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점수	0점	3점	5점	7점	10점

○ 서비스 기간(10점)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점수	0점	3점	5점	7점	10점

○ 거래건수(10점)

구분	10만건 미만	10만건 이상~ 100만건 미만	100만건 이상~ 500만건 미만	500만건 이상~ 1,000만건 미만	1,000만건 이상
점수	0점	3점	5점	7점	10점

○ 관련 자격 보유 여부(50점)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업자 (PG, ESCROW, EBPP)	소액해외송금업자	미등록
점수	50점	30점	20점	0점

□ 가산 기준(+)

○ 고객 민원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30점)

구분	미운영	운영 (연중무휴 사고대응 고객센터 부재)	운영 (연중무휴 사고대응 고객센터 보유)
점수	30점	15점	0점

○ FDS 또는 보안관제 운영 여부(20점)

구분	미운영	운영
점수	20점	0점

○ AML 운영 여부(20점)

구분	미운영	운영
점수	20점	0점

○ 멀티인증 적용 여부(30점)

구분	미적용	적용
점수	30점	0점

(별첨 3)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준

사업자 재무 규모¹⁾

+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²⁾·전자금융업자

+

평가항목³⁾ 점수가 일정수준(60점) 이상인 경우

- 1)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기업
- 2) 오픈뱅킹공동업무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 금융회사
- 3) 평가항목 심사 기준

평가항목	점수	내 용
기업신용등급	20	외부 전문 신용평가사를 통한 기업신용평가정보
납입자본금	10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
자기자본(자본총계)	10	직전년도 기업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자본총계) 항목
연간 매출액	10	직전년도 기업 재무제표 상 매출액 항목
관련 자격 보유 여부	10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해당 여부
AML 운영 여부	10	AML(자금세탁방지) 운영 여부
FDS 또는 보안관제 운영 여부	10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제 운영 여부
고객민원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	10	고객민원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 운영 수준
멀티인증 적용 여부	10	출금이체 계좌등록 시 멀티인증 적용 여부
—	100	—

※ 자체인증 허용기준 : 60점 이상

○ 기업신용등급(20점)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이하 또는 평가 불가
점수	20점	20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납입자본금(10점)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점수	0점	3점	5점	7점	10점

○ 자기자본(자본총계)(10점)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점수	0점	3점	5점	7점	10점

○ 연간 매출액(10점)

구분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점수	0점	3점	5점	7점	10점

○ 관련 자격 보유 여부(10점)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기타
점수	10점	0점

○ AML 운영 여부(10점)

구분	미운영	운영
점수	0점	10점

○ FDS 또는 보안관제 운영 여부(10점)

구분	미운영	운영
점수	0점	10점

○ 고객 민원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10점)

구분	미운영	운영 (연중무휴 사고대응 고객센터 부재)	운영 (연중무휴 사고대응 고객센터 보유)
점수	0점	5점	10점

○ 멀티인증 적용 여부(10점)

구분	미적용	적용
점수	0점	10점

(별첨 4)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관리기준

① 하위사업자 유형 구분

하위사업자 유형	서비스모듈 명칭	사용자 계좌 등록 단위
고객사 맞춤형페이	이용기관명(페이브랜드명) 외 문구 사용 가능 (예시 : 하위사업자명+페이) *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범용적 표현 가능	하위사업자 단위 또는 이용기관 단위
이용기관 자체페이(WEB)	이용기관명(페이브랜드명) 외 문구 사용 불가 (예시 : 이용기관명+페이, 페이브랜드명+페이) *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범용적 표현 불가	이용기관 단위만 가능
이용기관 자체페이(APP)		

※ 이용기관 자체페이는 이용기관의 서비스모듈을 하위사업자에 연동하는 방식에 따라 웹뷰 기반인 '이용기관 자체페이(WEB)'과 앱* 기반인 '이용기관 자체페이(APP)'으로 구분함.

*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앱으로 해당 앱 내에서 단독으로 회원가입 등 사용자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② 하위사업자 운영기준

[전 유형 공통사항]

- 이용기관이 하위사업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①하위사업자 유형 구분' 내 유형에 한하여 하위사업자 운영이 가능하며 그 외 유형은 운영 불가
- 서비스모듈이 이용기관의 서비스임을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서비스모듈 사용자 화면 내 이용기관명(페이브랜드명) 표기 필수
- 서비스모듈은 이용기관이 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위사업자는 사용자 계좌정보, 결제비밀번호 등 서비스모듈 관련 사용자 정보 이용 및 보유 금지
- 이용기관은 제3자에 의한 결제, 결제정보 타인 공유 등 서비스모듈에 본인 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 필요

[이용기관 자체페이(APP)]

- 이용기관은 하위사업자에서 사용자가 서비스모듈 구동을 요청할 시 자사 앱 서비스를 연동하여 앱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단,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앱 연동과 함께 옵션으로 웹뷰화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 웹뷰화면 단독제공 시 '이용기관 자체페이(WEB)'으로 분류
- 이용기관은 제16조 및 「오픈뱅킹 보안점검 관리기준」(별첨5)에 따라 이용기관 단위의 자체페이(APP)에 대한 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 '이용기관 자체페이(APP)'의 하위사업자는 운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고객사 맞춤형페이, 이용기관 자체페이(WEB)]

- 하위사업자를 최초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용기관 또는 하위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운영 신고서(별지 1)’ 을 제출하여 결제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이용기관은 제16조 및 「오픈뱅킹 보안점검 관리기준」(별첨5)에 따라 하위사업자 단위로 고객사 맞춤형페이와 자체페이(WEB)에 대한 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단, 하위사업자 단위의 서비스모듈 간 동일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서비스 취약점 점검결과로 대체 가능
 - *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운영 신고서(별지1)’ 의 서비스모듈 정보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 시 기능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음.
- ‘고객사 맞춤형페이’ 및 ‘이용기관 자체페이(WEB)’ 을 운영하는 이용기관은 하위사업자 목록을 반기별로 결제원이 요청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함.

(별첨 5) 오픈뱅킹 보안점검 관리기준

1 핀테크사업자 보안점검

구 분	사전점검	정기 사후점검	수시 사후점검
점검종류	- 기업 보안점검 - 서비스 취약점 점검 (Web, Android, iOS 등)		
점검시기	최초 이용계약 시	정기 사후점검 시기 ^{주1)} 도래 시	수시 사후점검 사유 ^{주2)} 발생 시
점검결과 제출	이용계약 체결 전 점검결과 제출	결제원이 별도로 통지한 날까지 점검결과 제출	계약 변경 전 또는 대고객 서비스 실시 전까지 점검결과 제출 (단, 기업 보안점검은 결제원과 협의하여 결정)

주1) 정기 사후점검 시기

기업 보안점검	- 이전 점검 대상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점검
서비스 취약점 점검	- 거래규모*에 따라 이전 점검 대상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점검 * 전년도 기준 거래규모가 이체 API 30만건 이상 또는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조회 API 100만건 이상인 이용기관은 1년 주기로 실시

※ 단, 수시 사후점검 시 당해년도 정기 사후점검 대체 가능(점검종류별 적용)

주2) 수시 사후점검 사유

기업 보안점검	- 전산센터 이전, 시스템 전반 개편 등 인프라 중대사항 변경 시
서비스 취약점 점검	- 민감거래 API* 추가 시 * ①이체 API(출금이체 API, 입금이체 API), ②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조회 API(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 API, 계좌통합조회 API, 카드정보 관련 조회 API 일체, 선불정보 관련 조회 API 일체, 보험정보 관련 조회 API 일체, 대출·리스정보 관련 조회 API 일체) - 서비스 플랫폼(Web, Android, iOS 등) 추가 시 - 사용자인증방식(결제원인증, 자체인증) 변경 시

② 참가기관 보안점검

구 분	사전점검	사후점검
점검종류	서비스 취약점 점검 (Web, Android, iOS 등)	
점검시기	최초 이용계약 시	서비스 실시일로부터 매 2년 경과 시 ^㉞
점검결과 제출	이용계약 체결 전 점검결과 제출	서비스 실시일로부터 매 2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점검결과 제출 ^㉞

- 보안점검 평가주체는 금융보안원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제1항의 평가전문기관 중 결제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함.
- 이용기관은 사후 보안점검 과정에서 미흡사항 발견 시 모두 보완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보완 시 해당 이용기관에 대해 오픈뱅킹업무 이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보안점검 시 제출한 서비스와 다르게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해 오픈뱅킹업무 이용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운영 신고서

이용기관 개요

기관명	
자격사항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업자(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기타자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전자지급결제대행(PG) <input type="checkbox"/> 기타()

하위사업자 유형

페이유형	고객사 맞춤형페이 <input type="checkbox"/> 이용기관 자체페이(WEB) <input type="checkbox"/>
------	--

하위사업자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앱서비스명 / 웹서비스 URL	
서비스 모델 (업종)	
전자지급결제대행여부	※ 재정산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 재정산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시 PG 등록 필요
이용기관은 상기 하위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업등록증(등록 시)

서비스모듈 정보

서비스모듈 명칭	
사용자 본인인증 절차	예시 : 휴대폰본인인증, 인증서 등
사용자 계좌등록 절차	예시 : ARS인증, 인증서, 점유인증, 계좌인증 등
사용자 계좌출금 절차	예시 : 결제비밀번호, 생체인증 등
이용기관은 상기 서비스모듈이 직불 결제만 가능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간편송금 등 기타 기능이 없음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 첨부서류 : 서비스모듈 진행단계별 사용자 화면,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취약점 점검 결과

점검일자	
점검결과	

※ 첨부서류 : 서비스 취약점 점검 결과서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에 따라 본 이용기관은 위 사항을 신고하며, 이와 사실이 상이하거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하위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이용 중지 또는 해지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이용기관명 : _____ 대표자 성명 : _____ (인)

(별지 2)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운영현황 (삭 제)

(별지 3) 보안관리약정서

보안관리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픈뱅킹업무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오픈뱅킹업무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를 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제3자 제공 금지)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오픈뱅킹업무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4조(활용 통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 ①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상호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측면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상대방”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송·수신) ①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수신 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을 이용,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회선 이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경우 대상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송·수신 구간을 암호화하여 당해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제6조(처리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①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이 상호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업무목적에 따른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개인

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호간에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2.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거래금액, 금융기관코드 등)

② 제1항의 업무목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고 “결제원” 과 “이용기관” 이 보관하기로 협의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결제원” 은 “이용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결제원에게 본 약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계정보(CI) 처리를 위탁한다.

④ “결제원” 은 본 약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별 일간한도(1천만원) 통합관리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계정보를 저장 및 보관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연계정보(CI)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하거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7조(파기 및 반납) ①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상대방”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이용 및 보유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상대방” 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령과 본 약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상호 별도의 파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 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파기확인서는 제4조 제3항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확인(결제)하여야 한다.

⑤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상대방” 의 보안관리 상태 및 정보파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이용기관” 또는 “결제원”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 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방” 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교육) “이용기관” 과 “결제원” 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계정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결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이용기관”에서 요청시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이를 검토 및 확인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의한 감독에 갈음한다.

1. 연계정보의 처리 현황
2. 연계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연계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취급에 대한 교육 여부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이용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재원의 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주체 권리보장) “결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결재원” 또는 “결재원”의 임직원(이하 통칭하여 “결재원 등”이라 한다)이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재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기관”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재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이용기관”은 이를 구상할 수 있다.